

디지털화폐 시대의 예금토큰 제도화 필요성

신상희 수석연구원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로 스테이블코인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치 안정성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지급수단인 예금토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은행들은 「CBDC 활용성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실현 가능성은 탐구할 예정이나, 현재 예금토큰은 혁신금융 특례로 도입되어 사업의 지속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예금 여부 인정 등 제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지지해 온 트럼프가 美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디지털화폐 시장의 판도 또한 변화할 조짐

-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를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임을 발표^[1]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美 달러, 국채 등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므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 및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여 가능
- 반면, 개인의 자금 및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이유로 재임 기간 동안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경하게 표명^[2]

■ 美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

1 비트코인 전략보유고 구축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약 20만 개)을 전략 자산으로서 보유 ^{*1)}
2 비트코인을 통한 국가부채 상환	미국의 국가부채(약 35조 달러)를 비트코인 보유고를 통해 상환
3 CBDC 금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CBDC의 미국 내 도입을 저지
4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지원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의 선도적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비트코인 채굴 장려
5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교체	가상자산에 비판적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임하고 親가상자산 인사*를 선임 * 트럼프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앤킨스 전 SEC 위원을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 (24.12.4.)
6 스테이블코인 육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 마련을 통한 법적 명확성 제공 ^{*2)}
7 비트코인·가상화폐 자문위원회 설립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가상자산 친화적인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완화적인 규제 체계 제시
8 가상화폐 자본이득세 폐지	비트코인 및 미국산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이더리움, 중국산 토큰 제외)
9 가상화폐 자기보관권리 보장	개인이 가상화폐 지갑(개인키)을 직접 보관할 권리를 보장
10 로스 울브리히트 사면	실크로드 마켓플레이스* 설립자인 로스 울브리히트를 사면 * 익명 사용자가 비트코인으로 마약 등 다양한 불법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다크웹 사이트

자료 : 언론보도 종합

※ 관련 법안이 현재 美 의회에 발의: 1) BITCOIN ACT of 2024, 2) Lummis-Gillibrand Payment Stablecoin Act 등

[1] “As part of our effort to provide regulatory clarity, we will create a framework to enable the safe and responsible expansion of stablecoins.” (2024 내쉬빌 비트코인 컨퍼런스 종 발언, 2024.7.27.)

[2] “I will never allow the creation of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Such a currency would give a federal government the absolute control over your money [...] they could take your money, and you wouldn't even know it was gone.” (후보 당시 뉴햄프셔 유세 종 발언, 2024.1.17.)

■ 트럼프 新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육성 및 관련 법안 입법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105억 달러('25.1.3. CoinGecko)로, '24년 동안 50% 이상 증가했으며 美 대선 이후에만 15%가 상승(CNBC)
 -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제도화·산업 육성 기대감에 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상승, 디파이 예치·대출 수익률 급등(연 10~20%) 등이 거래를 더욱 촉진
- 美 의회는 FIT21 및 Payment Stablecoin 법안^{|3|}을 발의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등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자 시도^{|4|}
 - FIT21는 스테이블코인을 ‘허가받은 지급 스테이블코인’(permissioned payment stablecoin)으로 지칭하며 발행자가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
 - Payment Stablecoin 법안은 미 달러화와 고정된 가치로 교환·상환·환매가 가능하고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암호자산을 ‘지급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으로 정의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행자, 준비자산 운영 등을 규제
- 우리나라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23.7.) 이후 2단계 후속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규제 도입이 예정
 - 단, 정부의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24.11.6)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스테이블코인 논의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반면, 글로벌 차원에서는 CBDC를 기반으로 예금토큰(Deposit Token)^{|5|}의 가능성은 탐구하는 민관 합작 이니셔티브가 활발히 추진

- RLN 등 기관용 CBDC^{|6|} 시스템 위에서 예금토큰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수단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공존하는 ‘토큰생태계’ 모형이 논의
 - '22년 Citi가 제안한 '규제 부채 네트워크'(RLN: Regulated Liability Network)는 모든 규제대상 디지털 화폐(기관용 CBDC, 예금토큰 등)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원활하게 생성·거래되는 시스템
 - 예금토큰을 통한 거래는 CBDC를 통한 기관 간 결제로 뒷받침됨으로써 결제 완결성 (settlement finality)^{|7|}이 보장되며, CBDC는 기관 간 거래용도로 국한되어 사용됨으로써 정부 통제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 가능

|3| 각각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Lummis-Gillibrand Payment Stablecoin Act. 단, FIT21 법안은 하원 발의·통과된 상황이며 Payment Stablecoin 법안은 상원에서 발의만 된 상황

|4| 김준철·박선중(2024),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7호(2024.7.)

|5| 예금을 토큰화 한 것으로, 은행이 분산원장기술(DLT)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하는 양도 가능한 예금청구권

|6| CBDC는 발행대상(사용 주체)에 따라 기관용 CBDC와 범용 CBDC로 구분되며, 기관용 CBDC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발행되어 지준예치금처럼 기관 간 결제에 사용되는 반면, 범용 CBDC는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에게 직접 발행되어 결제 등 일상생활에 직접 사용됨

|7| 지금 결과 최종적으로 중앙은행 내 금융기관별 당좌계좌의 증감이 발생함으로써 결제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것

- 美 NY연은 혁신센터 및 영국 은행연합회(UK Finance)는 RLN에 대한 실험을 진행
 - 美 NY연은 혁신센터 및 9개 금융회사^[8] 등은 기관용 CBDC 및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미국 내 은행 간 송금 및 달러 해외송금 가능성을 테스트
 - 영국 은행연합회 및 11개 금융회사^[9] 등은 예금토큰 및 스마트계약 기능을 활용해 P2P 중고거래, 주택매매, 토큰화된 채권 결제 등을 테스트
- 우리나라의 「CBDC 활용성 테스트」 또한 토큰 생태계 관점에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의 실사용 가능성을 실험한 것에 해당
 - 참여 시중은행은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바우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테스트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물품 결제 등을 직접 할 예정 ('25년 초 예정)

■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보다 예금토큰을 민간 디지털 지급수단으로서 先고려함이 바람직

- 준비자산 및 발행기관에 대한 신뢰에 의해 가치가 담보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액면가와 시장가가 괴리(unpegging)될 위험을 보유
 -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스테이블코인인 USDT(Tether)조차 '22년 5월 테라-루나코인 사태 당시 \$0.97로 가치가 하락한 바 있음
- 예금토큰은 스테이블코인처럼 활용가능하면서도 더욱 안전^[10]
 - 예금제도 및 은행 규제, 예금자보호제도, 은행 대차대조표에 대한 신뢰, 중앙은행의 특별대출 등이 예금토큰의 가치를 보장하는 점에서 예금토큰은 준비자산에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보다 강건하게 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짐
- 예금토큰은 자산운용,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대비 장점 보유

■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CBDC 비교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CBDC
발행주체	은행	민간	중앙은행
기반제도	예금제도	백서	법정화폐
가치담보	예금제도 신뢰, 은행 B/S 등	준비금(담보자산)	법통화제도 신뢰, 중앙은행 B/S 등
리스크 관리	현은행 규제, 내부통제 등	발행기관의 운영정책 등	-
인출위기 안전망	예금자보호제도, 중앙은행 지원 등	-	-
사례	JPM Coin, Citi Token Service	USDT, USDC, Dai 등	디지털위안화 (e-CNY) 등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 내 디지털통화

구분	종류	특성	발행 플랫폼	발행자	담보자산
기관용 (금8기관)	CBDC	기관용 결제자산	CBDC 시스템	한국은행	-
	I형 통화	예금토큰	CBDC 시스템	은행	CBDC (부분)
범용	II형 통화	이머니 토큰	CBDC 시스템	은행 등	CBDC
	III형 통화	특수 지급 토큰	외부 연계 시스템	은행 등	II형 통화

자료 : 한국은행

[8] BNY Mellon, Citi, HSBC, Mastercard, PNC, Swift, Truist, TD Bank, Wells Fargo

[9] Barclays, Citi, HSBC, LBG, Mastercard, NatWest, Nationwide, Santander, Standard Chartered, Virgin Money, VI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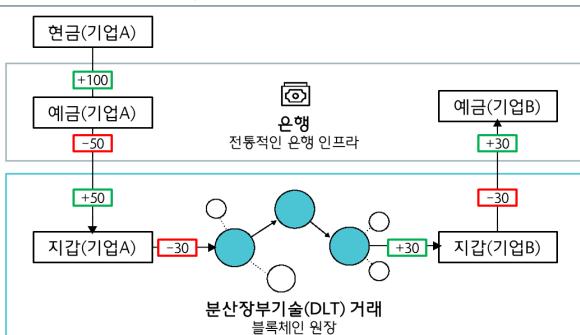
[1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토론회(2024.5.2.)에서 “개인적으로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은 규제 대상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음

- (자산운용) 준비자산을 국채 등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예금토큰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출 등으로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
- (자금시장)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형성 과정에서 예금 등 민간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되어 국채 등 정부 자금으로 집중될 경우, 민간 자금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인해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일종의 구축효과(crowd-out effect)가 유발될 수 있음
- JP Morgan, Citi 등 대형 글로벌 은행은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연중무휴 실시간 이용 가능한 국가 간 지급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중
 - JP Morgan Kinexys(구. Onyx)는 연중무휴 운영되는 예금토큰 서비스 JPM Coin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경 간 결제, 자회사간 유동성 관리 등 지원
 - Citi 또한 Citi Token Service를 통해 JP Morgan과 유사한 예금토큰 서비스 제공

■ 은행이 예금토큰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금토큰이 예금으로 간주되고 예금 관련 법규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 또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 한국은행·금융위원회는 예금토큰의 예금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혁신금융 특례를 부여하여 「CBDC 활용성 테스트」를 먼저 진행한 후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 예금토큰 발행을 은행 업무로 인정(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하고, 예금토큰을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으로 포함(예금자보호법 제31조 1항, 2항)하는 등 특례 적용
- EU·英 등 해외 주요국은 예금토큰과 예금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현행 은행·예금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우리나라로 비슷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EU) EBA(유럽은행감독청)는 예금토큰이 현행 은행규제의 적용을 받으므로 MiCA(암호자산시장법)에서 제외되었으며, 별도 법규 제정의 필요성은 미미하다고 해석^[11]
 - (英) PRA(건전성감독청)는 규제서한을 통해 예금토큰은 은행규제의 적용을 받으며 은행은 현행 라이센스 하에서 예금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발표^[12]
 - (美) RLN 실무반(Working Group)도 예금 소유권을 기록·이전하기 위해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하는 것은 예금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결론 

■ 예금토큰 기반 송금이체 서비스



자료 : JP Morgan-Oliver Wyman(2022)

■ 예금토큰에 대한 혁신금융 특례 주요 내용

특례 주요 내용	관련 법령
1 예금토큰 발행을 은행의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인정	은행법 27조, 27조의2, 28조
2 예금 토큰 이용자에게 예금자보호 적용	예금자보호법 31조 1항, 2항
3 전자금융거래 시 거래지시 내용 확인 의무 적용 배제(스마트계약 활용 시)	전자금융거래법 6조 1항, 18조 2항
4 예금 토큰의 양도·발행 시 은행 전산 시스템 대신 CBDC시스템 이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1조 2항
5 은행이 예금 토큰의 원장(장부)을 CBDC 시스템에서 관리 가능	정보처리위탁규정 4조
6 CBDC와 관련해 은행의 내부통신망을 다른 기관의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음	전자금융감독규정 18조 5호

자료 : 금융위원회

[11] "The EBA assesses potential benefits and challenges of tokenised deposits", EBA, 2024.12

[12] "Tokenisation and traditional finance", KPMG, 2024.4